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



2023. 4.

본 『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』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은 교육부 지침 및 대학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각 전형별 일정, 전형별 세부사항 등은 반드시 추후 발표되는 『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(수시모집 및 정시모집)』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.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

모집단위		입학정원				
포입한테	주간	야간	합계			
초등교육과	598명 0 598명					

2. 모집시기 및 전형별 모집인원

모집시기		전형명	정원 구분	모집인원				
	일반전형	학생부종합(교직적성전형)		245명				
	지역균형 특별전형	학생부교과(학교장추천전형)	정원 내	140명				
		학생부종합(국가보훈대상자전형)		5명				
┃ ┃ 수시모집	-141-741	학생부종합(저소득층학생전형)		20명				
	기회균형 특별전형	학생부종합(농어촌학생전형)		23명				
	7200	학생부종합(장애인학생전형)	정원 외	20명				
		학생부종합(서해5도학생전형)		3명				
		소 계		456명				
	일반전형	수능(일반학생전형)	정원 내	192명 ¹⁾				
정시모집	기회균형 특별전형	수능(저소득층학생전형)	정원 외	9명				
│ 「나」군 │	특별전형	기타(탈북학생전형)		3명				
	소 계							
	합 계							

- 1) 2023학년도 정시모집 등록포기자 4명 이월 인원 포함
- ※ 수시모집 정원 내 전형【학생부종합(교직적성전형, 국가보훈대상자전형, 저소득층학생전형), 학생부교과(학교장 추천전형】의 최종 등록자 수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때에는 정시모집 정원 내 수능(일반학생전형)으로 이월 선발함
- ※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성비 적용 선발하지 않음

1. 전형별 지원 자격

	전형 구분	지원 자격
	- 	■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
<u></u>)	1직적성전형)	인정된 자
지역균형 특별전형	학생부교과 (학교장추천전형)	■국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교직 잠재능력과 인성 및 적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(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자, 2021년 2월 이후 졸업자) ※ 추천인원 제한 없음
	학생부종합 (국가보훈대상자전형)	■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 제2호에 따른 '국가보훈대상자' 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
	학생부종합 (저소득층학생전형)	■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(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 자활급여,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 급여)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
기회균형 특별전형	학생부종합 (농어촌학생전형)	■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, 아래의 '가'또는 '나'에 해당하는 자(중·고교조기졸업자 불가) 가. 농어촌 재학(중학교 3년 + 고등학교 3년) + 농어촌 거주 6년(지원자, 부, 모) - 「지방자치법」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(읍, 면 지역) 또는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중·고등학교에서 중학교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지원자와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·면(농어촌)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나. 농어촌 재학(초등학교 6년 + 중학교 3년 + 고등학교 3년) + 농어촌거주 12년(지원자) - 「지방자치법」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(읍, 면 지역) 또는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졸업 시까지 읍·면(농어촌)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
	학생부종합 (장애인학생전형)	■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른 상이등급자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상이등급자
	학생부종합 (서해5도학생전형)	■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,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서해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중·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- 서해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2. 수시모집 평가 방법

♣ 선발방법 및 전형요소 반영 비율 및 점수

전형	선발 방법	선발 비율	전형요소 서류 평가	반영 비율 학생부 교과	및 점수 면접 평가	비고
학생부교과 (학교장추천전형)	일괄 합산	100%	-	70% (700점)	30% (300점)	·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설정 (4개 영역 등급 합 12등급 이내) · 비대면 면접평가
학생부종합 (교직적성전형)	일괄 합산	100%	100% (1,000점)	-	-	·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없음
학생부종합 기회균형 특별전형	일괄 합산	100%	100% (1,000점)	-	-	· 전형자료에 답변 녹화 동영상 추가

※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반영 방법

-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) 4개 영역을 반영함 (탐구 영역은 응시 과목 중 상위 등급 1개 과목을 반영함)
- 한국사 영역 응시 필수
- 제2외국어, 한문은 반영하지 않음
- ※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교직인성 평가를 위한 답변 녹화 동영상을 전형자료로 활용함

❖ 학생부교과전형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

구 분	내 용										
반영학기	졸업예정	졸업예정자의 경우 5학기, 졸업자의 경우 6학기 반영									
반영과목	반영학기	반영학기 내 석차등급 및 성취도가 표기된 전 과목									
가중치여부	학년별·교	L과유형별·과목	목별 가	중치 없	음						
점수산정방식 및 배점구간	점수로 석: 성취도 환· · 교과성 · 석차등	활기록부에 2 변환 구분 차등급 3단계 평가 5단계 평가 산점수 적 환산점수 급 및 성취도	1 A A 8 = 600 호 환산점	2 - - 7 + {석차 험수 평등	석차: 3 B B 6	등급 및 4 - - 5 및 성취	성취도 5 C C 4 도 환산	별 환선 6 - 3 점수 평	ㅏ점수 7 - D 2	8 - - 1 × 50}	성적 환산 9 - E 0

1. 전형별 지원 자격

	구분	지원 자격
(일	수능 !반학생전형)	■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이 반영하는 영역을 모두 응시한 자
기회균형 특별전형	수능 (저소득층학생전형)	■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이 반영하는 영역을 모두 응시하고,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(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 자활급여,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 급여)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
(탈	기타 !북학생전형)	■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탈북학생

2. 정시모집(수능위주) 평가 방법

♣ 선발방법 및 전형요소 반영 비율 및 점수

모집시기	전형	선발방법	선발 비율	전형요소 반영 점수 수능성적	수능최저학력기준
정시모집	수능(일반학생전형)	이고나하다	100%	100% (1,000점)	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
「나」군	수능(저소득층학생전형)	일괄합산	100%	100% (1,000점)	&음

[※] 수능(일반학생전형) 수능최저학력기준: 국어, 수학, 탐구(사회/과학) 영역의 평가와 별개로 영어 3등급, 한국사 4등급 이내, 수능(저소득층학생전형) 및 탈북학생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

♣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

반영 영역	활용 지표	반영 비율	반영 점수	반영 방법	비고			
국어	백분위	25%	250점					
수학	백분위	25%	250점	■수학 선택과목 중 '미적분' 또는 '기하' 선택 시 해당 백분위 점수의 3% 가산점 부여 ※ 단, 수학 가산점으로 인하여 합계 점수가 1,000점을 초과할 수 없음				
영어	등급	25%	250점	■ 등급에 따른 환산점수 사용				
탐구	백분위	25%	250점	■탐구영역 2개 과목의 백분위 평균 반영				
7	4	100%	1,000점					

- ※ 수능최저학력기준: 수능(일반학생전형) 영어 3등급 이내, 한국사 4등급 이내
- ※ 수능(저소득층학생전형) 및 탈북학생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
- ※ 제2외국어·한문은 반영하지 않음
- ※ 영어 영역: 등급에 따른 환산점수 부여

구분	등급	1	2	3	4	5	6	7	8	9
수능(일반학생전형)	화사전수	100	95	90				-		
수능(저소득층학생전형)	환연점구	100	95	90	85	80	75	70	65	60

※ 한국사 영역: 수능(저소득층학생전형)은 수능 반영점수(1,000점 만점)에서 최대 10점 감점

구분	등급	1	2	3	4	5	6	7	8	9
수능(일반학생전형)	가저	0	0	0	0			-		
수능(저소득층학생전형)	감점	0	0	0	0	-2	-4	-6	-8	-10

3. 정시모집(기타-탈북학생전형) 평가 방법

♣ 선발방법 및 전형요소 반영 비율 및 점수

전형	선발방법	선발비율	전형요소	반영비율	비고	
신영	신달당답	^{선글미뀰} 수능성적		면접평가	니뽀	
기타(탈북학생전형)	일괄합산	100% (1,000점)	-	100% (1,000점)	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없음	